

의안번호	제883호
의결 연월일	202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3월 4일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재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83
----------	-----

발의연월일 : 2025년 3월 4일

발 의 자 : 박재주, 김국기,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조성태
최정훈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스포츠기본법」 제27조 및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충청북도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스포츠기본법」
- 나. 관련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
- 라. 조례안예고 : 예고대상(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포츠를 통한 충청북도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이란 「스포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매년 10월 15일을 말한다.
2. “충청북도 스포츠 주간”이란 「스포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충청북도 스포츠 주간에 충청북도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도지사는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 스포츠 주간에 다음 각 호의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다.

1. 운동경기(씨름 등 민속경기를 포함한다)
2. 레크리에이션 활동

3. 스포츠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4. 그 밖에 스포츠 진흥에 관한 행사

제5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스포츠 주간 행사 운영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도지사는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충청북도 스포츠 주간에 충청북도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스포츠기본법

제27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①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스포츠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스포츠 주간으로 한다.

②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8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의 날이 속하는 달과 스포츠 주간이 속하는 달에 학교는 운동회 등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고, 직장은 그 실정에 맞는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 주간에 다음 각 호의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다.

1. 운동경기(씨름 등 민속경기를 포함한다)
2. 레크리에이션 활동
3. 스포츠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4. 그 밖에 스포츠 진흥에 관한 행사

③ 국가는 제2항 각 호의 스포츠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 사 유

- 본 조례는 지원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고,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